

**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**  
**임시주주총회의사록**

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회사”)의 임시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.

일 시: 2020년 7월 13일 오전 11시

장 소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(권선동) 소재 본점 회의실

주 주 총 수	:	2명
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	:	5,190,000주
출석 주 주 수	:	2명
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	:	5,190,000주

의장 대표이사 한정수는 의장석에 등단한 후 위와같이 법정원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**제1호 의안: 기본설계 성과품 양수도 계약 체결의 건**

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을 배포한 회의 안건 자료와 같이 경기도시공사와 본회사간의 기본설계 성과품 양수도계약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.

이에 출석 주주들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통한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**결의사항:** 의장의 제안대로 기본설계 성과품 양수도 계약 체결을 승인한다.

**제2호 의안: 정관 변경의 건**

의장은 배포한 회의 안건 자료와 같이 사업유형(10년공공임대->20년 장기전세) 변경에 따라 2019.12.24 작성된 주주간협약서 중 우선배당률에 관한 사항이 변경

되었으므로 정관제 9조의3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회의 안건자료와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.

이에 출석 주주들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통한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**결의사항:** 의장의 제안대로 정관변경을 승인한다.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오전 11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.

별첨: 1. 정관 신규대조표

2020년 7월 13일

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장 대표이사      한 정 수



<별첨> 정관 신.구 대조표

기존	변경
<p>제 9 조의 3 (종류주식의 내용과 수)</p> <p>① 회사는 [오천만(50,000,000)주]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이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, 에이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④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.....(이하생략)</p> <p>3.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이 ..... (이하생략)</p> <p>- n : 출자일로부터 임대 종료 시점까지의 총 일수</p>	<p>제 9 조의 3 (종류주식의 내용과 수)</p> <p>① 회사는 삼천이백육만(32,060,000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이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, 에이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④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.....(이하생략)</p> <p>3. 대상부동산의 매각가격이 ..... (이하생략)</p> <p>- n : 기금 최초출자일로부터 대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체결일까지의 총 일수</p>

